

23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
 24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
 25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
 26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사용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,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
 27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
 28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
 29. 「하천법」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,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
 30. 「항만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
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제46조의3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설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건설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[<개정 2013. 3. 23., 2024. 1. 9.>](#)
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 ·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. [<개정 2024. 1. 9.>](#)
[\[본조신설 2011. 6. 15.\]](#)

제46조의5(수용 및 사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 [<개정 2015. 6. 22.>](#)

1.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
 2. 제46조의3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 · 허가 및 고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. [<개정 2015. 6. 22., 2018. 4. 17.>](#)
1. 설치 · 운영계획의 수립 · 인가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게재
 2. 건설계획의 승인 및 제46조의3제8항에 따른 고시
-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· 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. [<개정 2014. 3. 18., 2015. 6. 22.>](#)
-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[<신설 2014. 3. 18.>](#)

[\[본조신설 2011. 6. 15.\]](#)

제46조의6(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) ① 사업시행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운영을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[<개정 2013. 3. 23.>](#)

[\[본조신설 2011. 6. 15.\]](#)

제47조 삭제 [<2015. 6. 22.>](#)

제47조의2(실적 신고 및 관리 등) ① 운송사업자(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,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